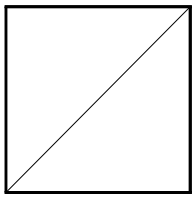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351호
의 결 연 월 일	2026. 7. 31. (제14차)

의결사항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31.

1. 의결주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금융회사의 범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추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하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속금융회사 위험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금융회사의 범위(안 제2조)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포함

나. 사모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반영(안 제5조)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분류기준이 변경된 바, 개정된 자본시장법상 용어 구분에 맞추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완료

라. 기　　타 : 제14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7.23.) 심의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를”을 “업무(「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제5조제2항 및 제3항 중 “경영참여형”을 각각 “기관전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① (생략)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③ 영 제2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를 말한다.	③ ---------- 업무(「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제외 등) ① (생 략) ② 영 제6조제4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만을 영위하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 ③ 영 제6조제4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그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업무집행사원을 포함한다) 및 투자목적회사 외에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여수신업, 보험업 중 1개의 업만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제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기관전용 ----------. ③ ---------- -- 기관전용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정책과	감독혁신국
연 락 처	02-2100-2832	02-3145-8010